【 27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6. 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고 현재는 폐쇄되어 운영치 않는 사업장 관련 조항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양주군"으로 개정함(안 제1조, 제9조)

나. 농어촌주택사업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2조 제1항)

다. 융자 및 보조대상에서 지붕개량사업, 변소개량 융자금을 삭제함(안 제9조)

라. 현재 폐쇄되어 운영치 않는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을 삭제함(안 제3장 제10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양주군이"로 한다.

제2조(정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택개량 사업을 말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제1항중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을 "군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제3항중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1호 가목 이율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을"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나목중 "자치단체가"를 양주군이"로 하고 동목 이율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다목중 "자치단체가"를 "양주군이"로 하고 "라목"을 삭제하며 "마"를 "라"로 하고 제5항중 "나 내지 마목"을 "나 내지 라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를 "양주군이"로 한다.

"제3장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제4장"을 "제3장"으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제10조내지 제13조"로 한다.

"제5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칙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주군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 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목적) - ①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택개량 사업을 말한다.
②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 및 보조) ①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①군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 .
② (생략) ③ (생략) 1. 지붕개량사업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2. (생략)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율 : 자금관리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 자금의 전입금리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1. (현행2와 같음) 가. - ○ - -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상환방법 (생략) ○ 이자납기 (생략)	○ 상환방법 (현행과 같음) ○ 이자납기 (현행과 같음)
나. 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 자금의 이율 ○ 상환방법 (생략)	나. 양주군이 - - - - - - - - - - - - - - - - ○ - 건설교통부장관이 - ○ 상환방법 (현행과 같음)
다. 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한 태양열시범 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 이율 (생략) ○ 상환방법 (생략)	다. 양주군이 - ○ 이율 (현행과 같음) ○ 상환방법 (현행과 같음)
라. 변소개량 융자금 ○ 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삭제)
마. (생략)	라. (현행 마와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 2호 나 내지 마목 및 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이하 생략)	⑤- - - 나 내지 라목 - - - - - - - - - - - 양주군이(현행과 같음)
제3장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운영사업	(삭제)
제10조(세입세출) (생략)	(삭제)
제4장 (생략)	제3장 (현행 제4장과 같음)
제11조 ~제14조 (생략)	제10조 ~ 제13조 (현행 제11조 내지 제14조와 같음)
제5장 (생략)	제4장 (현행 제5장과 같음)
제16조 ~ 제18조 (생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6조 내지 제18조와 같음)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1977. 8. 4
조례 제492호]

개정 1978.11.29 조례 제 601호
1979. 5. 4 조례 제 630호
1979. 8.31 조례 제 640호
1980. 7.15 조례 제 688호
1980. 7.23 조례 제 712호
1982. 4. 7 조례 제 787호
1982. 4.17 조례 제 829호
1982.12. 2 조례 제 872호
1984. 1.31 조례 제 9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칙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 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 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③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농어촌 주택사업

제 5 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 6 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 7 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 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 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8 조(자금의 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균분 상환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ㅇ이율 : 자금관리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ㅇ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ㅇ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ㅇ이율 :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 자금의 이율
ㅇ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한 태양열시범 주택개량 추가융자금
ㅇ이율 : 무이자
ㅇ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ㅇ이율 : 무이자
ㅇ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ㅇ이율 : 무이자
ㅇ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3.택지 조성사업
가. 이율 : 무이자
나.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④ 제3항 2호 가목규정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 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 2호 나 내지 마목 및 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사업중 할부금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제10조(세입세출) ①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공장 제품의 판매 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

량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 4 장 국민주택 사업

제11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는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운용조건에 의한다.

제13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 ①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② 할부상환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한국주택은행이 정하는 연체 이율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4조(융자금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삭제

제 5 장 보　　　칙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는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정)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7. 8. 4 조례 제 492 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 융자된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8.11.29 조례 제 601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78.11.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5. 4 조례 제 630 호)

이 조례는 1979년 8월 1일 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8.31 조례 제 640 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7.15 조례 제 688 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2호 다, 라목의 적용은 '80 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시범주택 추가 융자금과 '80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 개량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 개량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

부 칙 (1980. 7.23 조례 제 712 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4. 7 조례 제 787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17 조례 제 829 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7 조 제 3 항2호의 "가" 및 "나" 목의 이율은 82.6.28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12. 2 조례 제 872 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제4항,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이전에 기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1984. 1.31 조례 제 91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은행특별회계예산과목(기준)

(세입)

과목			비 고
관	항	목	
1. 농어촌주택사업	1. 사업수입	1. 지붕개량융자금 수입	지붕개량 융자금의 원금및 이자회수 수입
		2. 주택개량융자금 수입	주택개량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
		3. 과년도수입	체납액 수입
	2. 사업외 수입	1. 전입금수입	타회계 전입금
		2. 이월금	순 세계 잉여금과 시군 명시 이월비
		3. 잡수입	기타수입
2. 국민주택건설사업	1. 사업 수입	1. 주택매각수입	분양주택금 수입
		2. 주택대여료수입	임대주택대가료 수입
		3. 주택관리비수입	임대주택관리비 수입
		4. 택지매각수입	택지매각수입
		5. 융자금수입	주택매각수입
		6. 과년도수입	융자금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1. 사업 외 수입	1. 전입금수입	일반채
		2. 지방채	공 채
		3. 이월금	차 관
		4. 잡수입	

(세출)

과목			비 고
관	항	목	
1. 농어촌주택사업	1. 지붕개량	1. 지붕개량사업	
	2. 주택개량	1. 주택개량사업	
2. 국민주택건설업	1. 국민주택	1. 국민주택건설	
		2. 국민주택관리	
	2. 재해복구주택	1. 재해복구주택건설	
	3. 지방채	1. 차입금상환	
3. 예비비	1. 예비비	1. 농촌주택사업	
		2. 국민주택건설사업	

(별지 서식 제1)

농어촌 주택사업자금보조, 융자신청서

양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사업비(보조금을 교부 /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가옥의 위치
2. 가옥의 구조 및 평수
3. 개량종별
4. 사업비
5. (보조금을 교부 / 융자금을 대부) 신청액
6. 공사기간
7.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각1통(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불요)
   나. 차용증서 각 1통(보조신청인 경우 불요)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 보조신청서인 경우 불요

성명 ㊞ 〃

성명 ㊞ 〃

양주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규모

3. 사업실시기간

4. 사업비 소요예산

5. 자체자금 조달방법

6. 상환계획

7. 사업 추진 방법

8. 사업 관리 방침

9. 기 타